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8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4 ~ 08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4 ~ 09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 ~ 10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 ~ 11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14 ~ 12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4 ~ 13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9
2014 ~ 14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4 ~ 15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08
----------	-----------

제출연월일	2014. 02. 2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나라 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현행)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월 8만원), 전몰군경의 유족(월 5만원)
 - (변경) 명예수당 : 월 8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1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18백만원(2014년도 추경 확보 계획)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01. 09. ~ 2014. 01. 2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불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 월 8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0조제2항 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 월 8만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세출 (a)	군비	18	21	20	20	19	98
세입 (b)	이자 및 기타수익	0	0	0	0	0	0
총 비용(a-b)		18	21	20	20	19	98

3. 관련 의견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09
----------	-----------

제출연월일	2014. 02. 2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출향인들과 함께 경축하는 거창군민의 날을 보다 많은 군민과 출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군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민의 날을 변경함(안 제2조)

○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1. 27. ~ 2.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월”을 “9월”로, “국가적 행사 및”을 “전야제 또는 기념식이 공휴일과 겹치거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군민의 날) 매년 <u>10월</u> 마지막 주 금요일을 거창군민의 날(이하 “군민 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u>국가 적 행사 및</u>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 정할 수 있다.</p>	<p>제2조(군민의 날) --<u>9월</u>----- ----- -----<u>전야제</u> <u>또는 기념식이 공휴일과 겹치거나</u>-- ----- -----</p>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10
----------	-----------

제출연월일	2014. 02. 2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으로 거창군민상 후보자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를 변경함(안 제9조제5항)

○ (현행) 1년

⇒(변경)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

나. 용어를 순화함

○ 제반 ⇒ 모든, 자 ⇒ 사람, 인 ⇒ 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1. 27. ~ 2.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의 군민”을 “군민”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민의 날”을 “거창군민의 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반”을 “모든”으로 “거창군”을 “군”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를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창군”을 “군”으로 “거창군인 자”를 “군인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군민의 날”을 “거창군민의 날”로 한다.

제7조 중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9조 제목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에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

제11조제2항 중 “의결하되,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12조의2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의 군민</u>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u>자</u>를 발굴하여 거창군민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군민</u>----- -----<u>사람을</u>----- -----</p>
<p>제2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거창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u>군민의 날</u>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 ----- -----<u>거창군민의 날</u>----- -----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상대상) ① 군민상은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u>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u>에게 시상한다.</p> <p>② 군민상은 대상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u>심사위원회</u>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p>	<p>제3조(시상대상) ① ----- ----- -----<u>모든</u>-----<u>군</u>----- ----- -----<u>사람</u>----- ----- ② ----- ----- -----<u>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u>----- -----</p>
<p>제4조(수상자의 자격) ①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u>거창군</u>에 등록기준지를 둔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u>거창군인 자</u>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u>자</u>로 한다.</p> <p>② 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u>자</u>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추서할 수 있다.</p>	<p>제4조(수상자의 자격) ① ----- -----<u>군</u>----- ----- -----<u>군인</u>----- -----<u>사람</u>----- ----- -----<u>사람으로</u>----- ----- ② ----- ----- -----<u>사람으로</u>----- -----</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u>자</u>는 관할 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u>군민 20명 이상</u>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 ----- ----- -----<u>사람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후보자 추천공고) 후보자 추천공고는 연 1회로 하되, <u>군민의 날</u>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후보자 추천공고) ----- -----<u>거창군민의 날</u>----- -----</p>
<p>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상 예정일 7일 전까지 <u>군민상 심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p>	<p>제7조(수상자 결정) ----- ----- -----<u>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u>----- -----</p>
<p>제8조의2(대리 수상) 군민상을 받을 <u>자</u>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p>	<p>제8조의2(대리 수상) -----<u>사람</u> <u>이</u>----- ----- -----</p>
<p>제9조(군민상 심사위원회) ①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군에 군민상 심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제9조(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 ① ----- ----- -----<u>거창군민상</u> <u>심사위원회</u>----- -----</p> <p>② -----<u>명</u>----- <u>명</u>-----<u>명</u>-----</p> <p>③ ~ ④ (생략)</p> <p>⑤ <u>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만료된다.</u></p>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11
----------	-----------

제출연월일	2014. 02.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거창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우회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향우회 : 거창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

나.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출향인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

다.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
 - 군정시책 홍보
 -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군정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 2014년 1회 추경시 30백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3. 12. 17. ~ 2014. 01. 06.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우회”란 거창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홍보
2.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
4.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지원내용)

: 군수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행정과장 이 환 철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12
----------	-----------

제출연월일	2014. 02. 2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거창군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군민증서 외에 별도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군민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군민 수여 대상자에게 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3항)

○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함

○ 자 ⇒ 사람,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인 ⇒ 명

○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거 ⇒ ~ 에 따라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 2014년 1회 추경시 14,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4. 2. 3. ~ 2014. 2. 23.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정”을 “군정”으로 “거창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을 “군수는 군민”을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명예군민증서”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거창군”을 “군”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창군 관내”를 “관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을 “명”으로 “거창군 관내”를 “관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본청의 실·과·사업소장”을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창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창군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의 목적으로 거창군”을 “그 밖의 목적으로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를 “군 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거창군”을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거창군”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부터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거창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u>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군정</u>----- -----<u>거창군 명예군민증서</u>-----</p>
<p>제2조(수여대상)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는 <u>거창군민이 아닌 자로서</u>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u>명예군민증서</u>를 수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외적으로 <u>거창군</u>의 위상을 제고한 <u>자</u> 2. 문화·예술·체육·교육·경제 등의 분야에서 <u>군정발전</u>에 기여한 <u>자</u>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u>군민화합</u>에 공로가 인정되는 <u>자</u> 4. <u>제1호 내지 제3호</u>와 유사한 경우로서 <u>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제2조(수여대상) <u>군수는 군민</u>-----<u>사람으로서</u>---<u>각 호의 어느 하나</u>----- <u>거창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u>군</u>-----<u>사람</u> 2.----- -----<u>사람</u> 3.----- -----<u>사람</u>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u>----- -----<u>사람</u>
<p>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u>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u> 추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창군 관내</u> 공공기관의 장 2.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u>거창군 관내</u> 사회단체의 장 3. 10인 이상의 <u>군민</u> 4. <u>군청의 실·과·사업소장</u>, 읍·면장 <p>② <u>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내</u>----- 2. -<u>명</u>-----<u>관내</u> 3. -<u>명</u>----- 4. <u>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장</u>----- <p>② ----- -----<u>별지 제1호서식</u>-----</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①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u>거창군정 조정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u>기타의 목적으로 거창군</u>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u>의회</u>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① ----- -----<u>거창군정조정위원회</u>----- ----- ② -----<u>그 밖의 목적으로 군</u>----- ----- ----- ③ -----<u>군 의회</u>----- -----</p>
<p>제5조(수여방법) ① <u>제4조의 규정에 의거</u>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u>별지 제2호서식</u>]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p> <p>②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5조(수여방법) ① <u>제4조에 따라</u>----- -----<u>사람</u>-----<u>별지 제2호서식</u>----- ----- ② ----- ----- ----- ③ <u>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u></p>
<p>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u>거창군</u>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u>별지 제3호서식</u>]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6조(사후관리) ① ----- -----<u>사람</u>----- ----- ② -----<u>사람</u>----- ----- -----<u>군</u>----- ----- ③ -----<u>별지 제3호서식</u>-----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여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u>자가</u>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u>군조정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u>자는</u> 취소된 때부터 <u>제6조의 규정에 의한</u>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p>	<p>제7조(수여취소) ① ----- -----<u>사람이</u>----- ----- <u>거창군정조정위원회</u>----- ----- ② ----- ----- ----- ③ <u>제1항에 따라</u>----- -----<u>사람은</u>-----<u>경우부터 제6</u> <u>조에 따른</u>----- -----</p>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수여방법)제3항

: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행정과장 이 환 철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13
----------	-----------

제출일자	2014. 02.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
- 단,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라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의무화

나.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
- 업무지원을 위해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 수행

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 통합지휘소의 장(부군수)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

라.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안 제21조)

-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단계별 대응절차 및 임무 수행

마.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하여 정함(안 제22조 ~ 안 제23조)

- 재난현장 대응업무 종료 시 복구체계 전환을 위한 인력·장비 재배치
⇒ 복구활동 시작 시 통합지휘소 철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12. 10. ~ 12. 2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장(이하 “통합지휘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

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 ④ 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휘소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 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14
----------	-----------

제출년월일	2014. 02. 2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14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 원금의 직접대출 방식 도입, 용자지원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

○ 기금조성 목표액 200억원, 회계연도 마다 10억원 이상 출연 의무 규정 삭제함

나.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항 삭제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

다. 용자조건 및 용자한도액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 ① 운영자금의 용자한도액 변경(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② 시설자금의 용자조건 변경(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라.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제3조)

- 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용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용자기간의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용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1. 10. ~ 2014. 1.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금구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를 “기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를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용자사업 자금
2.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제7조제1항 중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용자금의 이차 차액 보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용자기간의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용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생략) ② <u>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u>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u></p> <p>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 ② (생략) ③ <u>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u> 1.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 2. 제12조에 따른 이차액 보전금 지원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p> <p>제7조(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u>기금에서 용자하는 재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도마다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충당한다.</u> ② (생략)</p> <p>제8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 ① ~ ② (생략) ③ <u>제7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2. 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사업에 지원된 용자금의 이차액 보전 3.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p>	<p>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금은</u>----- -- 1. ----- 2. ----- 3. ----- ③ -----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p> <p>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용자사업 자금 2.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3. ----- -----</p> <p>제7조(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 ----- ----- ----- ---기금의 이차수입----- -----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삭 제> 2. ----- -----</p>

현 행	개 정 안
<p>4.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지원</p> <p>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p>	<p>4. ----- -----</p> <p>5. ----- -----</p>
<p><u>제11조(용자 및 보조지원 조건) ① 용자 한도액은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생산에 따른 운영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u></p> <p><u>② 용자금의 대출 및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1. 시설자금은 <u>3년 거치 5년 균분상환</u></p> <p>2. 생산에 따른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p> <p>③ ~ ④ (생략)]</p>	<p><u>제11조(용자 및 보조지원 조건) ①</u> ----- ----- -----<u>3천만원</u>----- -----</p> <p>② ----- ----- -----</p> <p>1. -----<u>2년 거치 3년 균분상환</u></p> <p>2.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 군수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한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u></p> <p><u>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 이식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u></p> <p><u>③ 이자차액 보전금리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15
----------	-----------

제출연월일	2014. 02. 2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표준안 준용
- 농기계 임대료 하향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임대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준수

2. 주요내용

가.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한 임대농기계 선정 등 명시(안 제6조제4항)

- 임대수요가 확보되지 않거나 임대유형에 부적합한 기종 선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구입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임대사업 효율성 증진 확보

나. 임대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3항)

-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까지 임대대상 확대

다. 임대료를 하향조정하여 농업인 부담경감 시킴(안 별표)

- 농기계 구입가격이 1,000천원 미만인 경우 1일 임대료 : (현행) 1만원 ⇒ (개정) 5천원으로 하향조정

라. 심의위원회 명문화(안 제19조 ~ 제22조)

-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문화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나. 예산조치 : 422백만원(2014년 본예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01. 17 ~ 2014. 02. 0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 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 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종별 임대료는 별표를 기준으로 징수하며, 임대사업이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임차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자가영농에 직접 사용할 경우
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반환
3.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3개월 제한

가. 제15조제1항을 2회 위반한 경우

나.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등 포함)

2. 6개월 제한

가.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 임대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8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사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 또는 임대실적이 극히 저조한 농기계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대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다만,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관리담당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 및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별 임대료 징수 기준

구 분	규 격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비 고
기종 및 작업기	콩정선 작업기 사용료	-	500원	콩1포당 (40kg기준)
	자주 및 부착형	100만원 미만	5,000원	
	”	100만원 ~ 400만원 미만	10,000원	
	”	400만원 ~ 1,000만원 미만	20,000원	
	”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30,000원	
	”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50,000원	
	”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60,000원	
	”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80,000원	
	”	5,000만원 이상	1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자	임 차 자				
거창군수	성명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주소				
임대차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대		
부속작업기		수량	대		
		수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금	원(\)			
농기계운반	위탁운반				
	출고	장소	희망시간	거리	요금
				km	원
	입고	장소	희망시간	거리	요금
			km	원	
농기계사용계획					
기계명		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	읍면				
작업면적	㎡ (일 평)				

「거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4.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한다.
5.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자 : 거창 군수 (인)

임차자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임 차 인	주 소	거창군 읍·면		
	성 명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기계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			수 량	대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기간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감면금액	금 원			
작업위치	거창군 읍·면			
작업내용			작업량	m ²
감면신청 사유				

「거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담당자	담당	과장	소장	결재

구입금액					(단위 : 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구입일자		형식(규격)	
내구연한		제조번호	
성능(사양)			
주요특징			
제조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뒷면)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경비
 - 농기계 구입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농기계 장비 유지 및 관리비
- 조례안
 -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세출	도비		-	-	-	-	-	-
	군비		422	450	450	500	500	2,322
	소계(a)		422	450	450	500	500	2,322
세입	세외수입 (농기계임대료)		150	180	210	250	300	1,090
	소계(b)		150	180	210	250	300	1,090
총 비용(a-b)			272	270	240	250	200	1,232

3. 관련 의견

- 농작업 기계화율 증가 및 소규모 영농인구의 관내 유입으로 농기계 임대건수가 해마다 증가됨에 따라 농기계 구입, 수리전문 인력 확보, 장비 유지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